

大田廣域市 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482
----------	-----

提出年月日：1994. 10.

提 出 者：大田廣域市長

1. 提案理由

- 가. 責任經營體制 確立과 事業推進의 專門性 圖謀를 위하여 現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中인 宅地開發, 住宅建設, 賃貸住宅管理등의 事業을 '95. 1. 1 자로 한밭開發公社로 移管하는데 따른
- 나. 資本金增資, 事業目的등 事業 推進에 필요한 部分을 改正하고 上位法 改正으로 인한 일부 未備한 部分을 改善 補完하고자 하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公營開發事業을 公社에서 推進하게 됨에 따라 設置目的과 事業業務를 追加하고 事業領域 擴大를 위하여 議會의 同意를 얻어 公社가 直接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도록 함(第1條, 第19條)
- 나. 地方公企業法 改正에 따른 權限의 委任, 定款記載事項을 變更하고 準豫算 規定을 新設함 (第3條, 第8條, 第24條)
- 다. 宅地開發, 住宅建設등의 大規模 事業의 推進에 따라 業務가 圓滑히 運營될 수 있도록 公社의 授權資本金 規模를 擴大함. (第4條)
- 라. 出資하는 資本金에 대한 柱式發行을 簡素化하고 柱式發行總數를 授權資本金에 맞추어 變更함 (第5條)

- 마. 條例 內容中 重複記載된 事項을 削除하고 地方公企業法の 規定에 맞도록 調整함(第6條, 第36條, 第37條)
- 바. 地方公企業法 規定에 의한 損益金 處理 順序에 따라 公社運 營中 發生되는 收益金과 損失金의 處理順序를 調整하려는 것임 (第27條)
- 사. 公營開發事業의 持續적이고 원활한 事業 推進을 위하여 地 方公企業法에 規定된것과 같이 公務員을 公社에 派遣하여 業務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함 (第40條의2)
- 아. '95. 1. 1字로 公營開發事業團에서 推進하던 宅地開發, 住宅 建設등의 業務가 公社로 移管됨에 따른 後續 措置를 規定함 (附則 第1條, 第2條)
- 자. 公營開發事業의 원활한 業務推進을 위하여 一定한 業務 範圍內 에서 市長의 公印을 備置 使用할 수 있도록 함 (附則 第3條)

3. 參考事項

- 가. 地方公企業法 第65條의2, 第67條, 第70條, 第75條, 第75條의2
- 나. 地方公企業法施行令 第43條의2, 第50條, 第51條의2, 第58條
- 다. 商法 第437條
- 라. 大田直轄市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 附則 第2條

참 고 사 항

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2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70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중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의2(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3조의 2(정관 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4 (第38回 臨時會 - 內務 第3次 別添)

제50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20이상을 자본금액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 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 ① 내무부장관은 법 제7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2조의 제2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공단외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에 관한 승인권

다. 상법

제437조(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 대전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부칙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대전직할시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을 삭제하고 “함으로써 건설자재생산 및 주차장관리 청소 위생사업”을 “하여 택지 및 주택의개발과 공급, 공공복지사업”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을 “대전직할시장(이하“직할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200억원”을 “390억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정한다”를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1,000주권의 6중”을 “1,000주권, 10,000주권의 7중”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중 “400만주”를 “780만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제7호중 “조직” 다음에 “ 및 정원”을 삽입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기타 필요한 사항

동조 제2항중 “장관”을 “내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4.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5.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 단지 조성사업
6.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사업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시멘트가공사업중 레미콘.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
8. 도시환경 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산업폐기물 포함)
9.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관련사업

6 (第38回 臨時會 - 內務 第3次 別添)

10. 주차장 사업
11.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
12. 공원사업
13. 지하도점 상가 조성사업
14. 도시가스사업
15. 궤도사업
16.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7.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0조 제3항중 “수탁자가 상호협의를 거쳐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수탁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로 한다.

제21조 단서중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 시·도지사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직할 시외 다른 지역도 포함 할 수 있다”를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중 “1개월”을 “35일”으로하고 제2항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길때에는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의 적립
 2. 배당금
 3.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한 적립금

4.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동조 제2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차기이월 결손금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2항중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4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 2(공무원의 파견)직할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의무의승계) 공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대전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및 택지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1995년1월1일부터 승계한다.

제3조(직할시장의 공원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직할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1. 시영주택의 소유권 이전.분양.계약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 용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업무
5. 지적공부정리 신청

신 · 구 조문대조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건설자재생산및 주차장관리, 청소위생사업 등 도시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사무소)</p> <p>① (생략)</p> <p>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내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u>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u>200억원</u>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u>수권자본금의 4분의1이상</u>으로 정한다.</p> <p>제5조(주식의발행등)</p> <p>① ~ ② (생략)</p> <p>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p> <p>④ (생략)</p> <p>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400만주</u>로 한다.</p>	<p>제1조(목적)이 조에는 <u>지방공기업법(이하 법</u>이라한다) ----- 하여 <u>택지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공 복리 사업</u> -----</p> <p>제3조(사무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대전직할시장(이하“직할시장”</u>이라 한다) -----</p> <p>제4조(자본금)① ----- 390 <u>억</u>원 ----- <u>은 공사의</u> 정관으로 정한다.</p> <p>제5조(주식의발행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1,000주권, 10,000주권의 7종으로</u> 발행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u>780만주</u> -----</p>

현행	개정안
<p>제6조(주식에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한다.</p>	<p>제6조 (삭 제)</p>
<p>제8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6. (생략) 7. 조직에 관한사항 8. 내지 16. (생략) <p>(신 설)</p> <p>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장은 장관에게 인가 신청하기전에 대전직할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정관)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6. (현행과 같음) 7. 조직및 정원에 관한사항 8. 내지 16. (현행과 같음) 17. 기타 필요한 사항 <p>② -----</p> <p>----- 내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 -----</p>
<p>제19조 (사업업무)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자재생산및 판매 (세멘트가공사업 레미콘, 아스콘은제외) 2. 주차장관리 사업 3. 청소위생사업(산업폐기물포함) 4. 도시개발및 지역관련 사업 5. 하천관련 사업 6. 공원사업 7. 지하도검 상가조성 사업 8. 도시가스 사업 9. 궤도사업 	<p>제19조(사업업무)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 일반건축물의취득, 개발, 분양, 임대및 관리사업 2. 토지의취득, 개발, 분양, 임대및관리사업 3. 도시 재개발 사업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5. 시장사업및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 6. 도시개발및 지역관련 사업 7. 건설자재생산및 판매 (세멘트가공사업 중 레미콘, 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 8. 도시환경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현 행	개 정 안
<p>10.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신설)</p> <p>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직할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시·도지사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p>	<p>(산업폐기물 포함)</p> <p>9. <u>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 재활용 관련사업</u></p> <p>10. 주차장 사업</p> <p>11.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p> <p>12. 공원사업</p> <p>13. <u>지하도경 상가조성사업</u></p> <p>14. 도시가스 사업</p> <p>15. 궤도사업</p> <p>16.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17.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p> <p>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p> <p>제20조(사업의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의한다.</p> <p>제21조(사업구역) ----- -----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u>경우 직할시외 다른 지역도 포함 할 수 있다.</u></p> <p>제24조(사업계획및예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및 수지계산서를 영제50조의 규정에의거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 개시1개월전에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또는 수지계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p> <p>(신설)</p> <p>(신설)</p>	<p>제24조(사업계획및예산)① ----- ----- ----- <u>35일전에</u> ----- -----</p> <p>②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것으로 본다.</p>
<p>제27조(손익금의처리)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이월결손금의 보전</u> 2. <u>법정준비금의 적립</u> 3. <u>주주에대한 이익배당</u> 4. <u>임의적립금의 적립</u> <p>② 공사의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준비금 보전</u> 2. <u>차기이월 결손금</u> 	<p>제27조(손익금의처리)① ----- ----- 이익이 생길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다음 각호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이익준비금의 적립</u> 2. <u>배당금</u> 3. <u>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한 적립금</u> 4. <u>차기이월이익잉여금</u>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u> 2. <u>이익준비금</u> 3. <u>차기이월결손금</u>

현행	개정안
<p><u>제36조(급여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u></p> <p>공사는 그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직할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u>제37조(감독) ①(생략)</u></p> <p>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p>③ 제2항 제2호의 규정된사항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장이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신설)</p>	<p>(삭제)</p> <p><u>제37조(감독) ①(현행과 같음)</u></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 직원의 급여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p><u>제40조의2(공무원의 파견)</u> 직할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부칙</p> <p><u>제1조 (시행일)</u>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주식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1994년12월31일까지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 및 택지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1995년 1월1일부터 승계한다.</p> <p>제3조 (직할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 계약 관련 업무2. 국민주택건설 용자금에 대한 근거당 말소 동기업무3. 용지의취득및 공급 관련업무4. 재산관리업무5. 지적공부정리 신청

大田廣域市 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對한 修正案

議案 番號	482
----------	-----

提出年月日 : 1994. 12. .

提 出 者 : 大田廣域市長

1. 修正理由

가. '94. 12. 31까지 한시조적으로 運營되던 公營開發事業團의 事業을 한밭開發公社로 引繼하여 推進할 計劃에 따라 資本金 增資, 事業目的 등 事業 推進에 필요한 部分을 改正하고자 하였으나

나. 推進過程에서 事業의 連繫性 등 諸般與件이 未洽하여 圓滑한 事業推進과 公社의 授權態勢 準備期間을 위하여 公營 開發 事業團 業務移管時点を 6個月간 延期하고자 하는 것임

2. 修正主要骨子

가. 事務引繼引受 前에 資本金 增資 節次, 定款 承認 등의 事前 準備를 위하여 條例施行日을 공포한 날부터 施行하기로 함 (附則 第 1條)

나. 公營開發事業團 존치기한이 '95年6月30日까지 延長됨에 따라 住宅事業 및 住宅事業과 그 附帶事業에 관한 權利義務을 '95年 7月 1日부터 承繼하도록 함 (附則 第2 條)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부칙 제1조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부칙 제2조중 “1994년 12월 31일”을 “1995년 6월 30일”로 하고,
“1995년 1월 1일”을 “1995년 7월 1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당 초 안	수 정 안
<p>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1995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권리의무의승계) 공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대전직할시 공영개발 사업단 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 및 택지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1995년 1월 1일부터 승계한다.</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권리의무의승계)1995년 6월 30일까지1995년 7월 1일부터</p>